공매도 관련 유상증자 참여제한 확인서

(자본시장법 제 18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1항에 따라)

모집 또는 매출 계획이 처음 공시(증권신고서, 소액공모공시서류, 주요사항보고서, 한국 거래소 공시(공정공시 포함)등이 공시된 날 중 가장 빠른 날) 된 날의 다음날부터 해당 모집 또는 매출의 공시 또는 변경공시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가액이 결정되는 날까지 <mark>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주식을</mark> 취득하여서는 아니되며, 이를 위반하여 취득할 경우(같은 법 제429조의 3 제2항에 따라)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다만,(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8조의 4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6-34조에 따라) 모집 (매출) 가액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* 예외적으로 주식취득이 허용됩니다.

*모집(매출)에 따른 주식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중에 전체 공매도 주문수량보다 많은 수량의 주식을 가격 경쟁에 의한 거래 방식으로 매수한 경우(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에 매수한 경우로 한정)등

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.

년 월 일

성명: (인 또는 서명)

유선 접수시 기재사항

■녹취시간: ■접수자:

■녹취번호:

담당자 책임자

